

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2003. 3. 18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3. 3. 11
- 나. 제출자 : 서 산 시 장
- 다. 회부일자 : 2003. 3. 11
- 라. 상정일자 : 2003. 3. 18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 : 세무과장 최진각)

가. 개정이유

-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서산시세조례중 지방세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골자

-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,000분의 115에서 1,000분의 120으로 인상함(안 제40조제1항).
- 시·읍·면에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시내의 농업소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1조제1항, 제2항).

-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7월 1일에서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 조정(안 제98조제2항).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의 개정에 근거하여 중앙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
- 주요 검토 내용은
 - 조례안 제40조제1항의 주행세 세율 인상은 운수업체의 경영난을 더욱더 내실있게 지원키 위하여 세율을 소폭 인상하고
 - 조례안 제51조제1,2항은 농업소득 조사위원회를 시에만 설치 운영하여 읍·면에 산만하게 분산 설치되었던 사항을 정리하면서 운영횟수가 많은 번거로움등을 해소하므로서 시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심도있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하며
 - 조례안 제98조제2항의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기간이 10일밖에 되지 않아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던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자의 어려움을 해소시키면서 기타 지방세의 납기가 대부분 월말로 되어 있는 점을 감안 통일성을 기하는 것으로서
- 본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 및 소수의견 : 없었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의안번호	제 43 호
의 결	2003. 3. .
년 월 일	(제 회)

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2003. 3. //.

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43호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3. //

제 출 자 : 서산시장

1. 개정이유

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서산시세조례중 지방세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일관성 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,000분의 115에서 1,000분의 120으로 인상함. (안 제40조제1항)
- 나. 시·읍·면에 있는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시에 설치하도록 하고 시 내의 농업소득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51조제1항, 제2항)
- 다.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를 7월1일에서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 조정. (안 제98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지방세법 제3조(지방세의 부과·징수에 관한 조례)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,과세객체,과세표준,세율 기타 부과·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이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써 하여야 한다.

나. 기타자료

- 충청남도 세정13400-2209(2002. 12. 27)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및 시·군세조례개정내용 송부

- 다. 입법예고 결과 (2003. 1. 11 - 1. 31) : 제출 의견 없음

서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3제1항중 “1,000분의 115”를 “1,000분의 120”으로 한다.

제51조제1항 및 제2항중 “시·읍·면”을 각각 “시”로 한다

제98조제2항중 “7월 10일”을 “7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) 제98조의 개정규정은 이조례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[신 · 구조문 대비표]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40조의3(세율)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<u>1,000분의 115</u>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0조의3(세율) ①----- -----<u>1,000</u> ----- 분의 <u>120</u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1조(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) ①수입금액·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<u>시·읍·면에</u>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.</p> <p>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<u>시·읍·면</u>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.</p> <p>③~④ (생략)</p>	<p>제51조(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</u>----- -----.</p> <p>②----- <u>시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~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8조(납기) ① (생략)</p> <p>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<u>7월 10일</u>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(군수)에게 신고·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98조(납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<u>7월 31</u> ----- <u>일</u>-----.</p>